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7. 15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



-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
-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사유	주소
김○성	1991. 5. 20.	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에 따른 5년간 재참여 제한, 기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전액 환수	폐문부재	양양군 양양읍 동해신묘길 (이하생략)

- 공고기간 : 2024. 7. 15. ~ 2024. 7. 29. 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손철호(Tel. 033-630-192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